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공정책학과 내규

2018년 01월 27일 제정
2020년 11월 04일 개정
2021년 09월 28일 개정
2023년 09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라 공공정책학과(구 공공관리학과, 이하 공공정책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학부연계과정 포함)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

제3조 (학생모집과 전형)

공공정책학과 소속 교수들은 공공정책학과 석·박사 및 통합학위과정(학부연계과정 포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학생의 모집에 노력하며, 입학 전형에 참여한다.

제3장 교과과정운영

제4조 (교과목 배정과 수강지도)

- ① 교과목은 개설전공을 고려하여 학생중심으로 운영한다.
- ② 교과목(강의) 배정에 있어 학과교수는 물론, 외부 교수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 전문가라 함은 해당 분야에 상당

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말한다.

- ③ 지도교수는 학생이 전공과 부합되는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강지도 한다.

제5조 (학기 당 개설 교과목 수)

학기 당 개설 교과목은 5과목 내외로 한다.

제6조 (연구지도 세미나)

공공정책학과 소속교수들은 연구지도 세미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업 및 토론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7조 (외국어자격시험)

외국어자격시험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자격시험을 그 기준으로 한다. 내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제8조 (타 학과 연계수강)

학생의 연구 분야가 학제 간 융·복합 영역으로 확대되어 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 이외의 수강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와 협의하고 주임교수는 해당분야 학과 및 대학원 교학행정팀과 협의하여 타 학과 교과목을 연계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타 학과 연계수강 교과목은 학기당 1과목, 전체 학위과정 중 3과목을 넘을 수 없다.

제4장 논문지도

제9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전공희망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연구보조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연구보조장학생 신청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교수의 정년 자격상실)

교수는 정년과 동시에 지도교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장 종합학력시험 중 전공자격시험

제11조 (전공자격시험 과목과 합격기준)

전공자격시험의 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하며, 합격기준은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는 전공과목 18학점, 박사는 전공과목 27학점, 석·박사 통합 과정은 전공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취득학점에 연구지도학점은 제외한다.
- ② 석사학위 전공자격시험은 2과목으로 하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80점 이상 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③ 박사학위 전공자격시험은 4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80점 이상 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④ 통합학위과정 전공자격시험은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 ⑤ 과목낙제의 경우 다음 학기에 해당 과목을 다시 치르며, 모든 과목에 합격할 때까지 학위 심사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12조 (전공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

전공자격시험은 필기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출제와 채점은 해당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주임교수가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전공자격시험 면제요건)

전공자격시험 시행 직전 월 (즉, 2월 또는 8월)까지 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교신저자, 제1저자포함)에 단독 또는 공동정책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논문 1편을 게재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동정책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논문 2편을 게재한 경우, 전공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전공자격시험 면제신청은 반

드시 해야 한다.

제6장 학위 심사 청구 논문 제출 및 심사

제14조 (박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 제출자격)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자격시험 및 전공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 요건을 갖춘 박사과정 5학기 이상의 학생은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득한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은 1)연구계획서 발표 2)논문예비발표 3)논문심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15조 (연구계획서 (Proposal)의 발표)

- ① 연구계획서에는 논문제목, 목차,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이론적 배경, 분석의 틀과 구체적인 연구방법, 예상 결과 및 참고문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표일로부터 2주전까지 연구계획서 10부와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는 해당 연구계획서가 발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연구계획서 발표는 3월과 9월 셋째주 화요일에 시행하며 시행 일이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연구계획서 발표에는 지도교수와 2명 이상의 학과 전임교원이 참여해야 한다.
- ⑤ 연구계획서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생은 발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 결과보고서에는 연구계획서 발표에 참석한 전임교원의 서명을 득하여 통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발표자는 연구계획서 발표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⑦ 연구계획서 발표에는 교수 및 학생이 참관할 수 있고 연구계획서의 발전을 위해 질의할 수 있다.

제16조 (논문의 예비발표)

- ①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학생이 논문 예비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논문예비발표 직전 월까지 SCI,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에 단독 또는 공공정책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논문 1편을 게재하거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단독 또는 공공정책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발표자는 발표일로부터 2주전까지 완성된 논문 10부와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도교수는 해당논문이 예비발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예비발표는 3월과 9월 셋째주 화요일에 시행하며 시행일이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예비발표에는 지도교수와 2명 이상의 학과 전임교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⑥ 예비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생은 발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표 결과보고서에는 예비발표에 참석한 전임교원의 서명을 득하여 통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발표자는 예비발표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예비발표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은 논문심사 이전에 수정발표를 명할 수 있다.
- ⑧ 예비발표에는 교수 및 학생이 참관할 수 있고 예비발표의 발전을 위해 질의할 수 있다.

제17조 (논문심사)

- ① 예비발표 이후 학생의 지도교수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논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이 하며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가 정한다. 지도교수는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한다. 심사위원 중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1명 이상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학칙에 준한다.

제18조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

- ①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과정은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1)연구 계획서 발표 2)논문 예비발표 3)논문심사의 순서로 진행되며, 다만 논문 예비발표를 위한 학술지 게재요건은 면제한다.
-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는 3인의 교수가 한다. 이 경우 지도교수는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한다. 심사위원 중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1명 이상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학칙에 준한다.
- ③ 석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 외에 전공분야 연구논문으로도 석사학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교수는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하며, 심사위원 중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7장 의결

제19조 (의사결정 방식)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은 공공정책학과 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 1/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